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 시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
대상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변경〉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29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진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2. 9.
3. 회 부 일 : 2025. 1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선거나 시·도지사선거처럼 선거구가 전국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일일이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3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예비후보자가 홍보물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을 교부받고자 할 때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 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 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 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 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u>구·시 ·군의 장에게</u>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 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 하여야 한다.	③ ----- ----- ----- ----- -----구 ·시·군의 장(대통령선거의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가 담긴 세대주명단을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이 이를 작성·교부하도록 하고 있음(제60조의3제3항).¹⁾

그런데, 대통령선거와 같은 전국단위 선거 또는 시·도지사 선거와 같은 광역단위 선거의 경우 구·시·군의 장에게 일일이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²⁾

특히 이와 같은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하는바,³⁾ 전국 및 광역단위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예비후보자가 홍보물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을 교부받고자 할 때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대통령선거의 경우 전국의,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해당 시·도의 세대주명단을 한번에 교부받을 수 있게 되어 예비후보자의

-
- 1)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 2) 현행법에 따른 경우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는 전국 220여개 기초자치단체에 일일이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해야 함.
- 3)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은 후보자 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감소되고, 정책 구상 등 보다 중요한 선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기존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작성·교부하던 세대주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단순 취합하여 전달하는 경우 예비후보자의 편의 개선과 별개로 행정기관 내부의 비효율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세대주명단 자료의 통합관리·배부 시스템의 구비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또한 현재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과 함께 납부하는 작성비용을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시·도지사에게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 통합작성비용의 결정기준과, 이를 각 기초자치단체에 분배할 필요성 및 그 비율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과 같이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처를 선거별로 다르게 할 경우 예비후보자의 편의가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 세대주명단교부 사무를 수행하게 될 행정안전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며,

행정안전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예비후보자의 편의성,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예비후보자 관련 사무가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임을 감안하여 예비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세대주명단을 받아 예비후보자에게 교부하는 방안도 선거의 공정성 확보 및 예비후보자의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